일반연구소 설립 및 운영 내규

제정일: 2009. 8. 1 개정일: 2019. 2. 1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 학칙 제9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 내에 설치된 일반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의 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소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내규는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는 모든 연구소에 적용한다.
 - ② 삭제<2018.12.19>

제 2 장 설 립

- 제3조(설립신청)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[별첨 1]의 일반연구소 설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4. 6. 9>
- 제4조(설립승인) 연구소의 설립은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한다.

제 3 장 구 성

- **제5조(연구소장)**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장을 두며 연구소장은 일반연구소 설립신청서의 신청인 대표로 한다.
 - ② 연구소장은 해당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6조(연구진)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은 본 대학교 소속 교원 및 외부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.<개정2018.12.19>
 - ② 연구소에 외부인을 연구원으로 두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여야 한다.<개정2018.12.19>

제 4 장 운 영

- 제7조(회계)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와 같다.
 - ② 연구소는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③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의 일반적인 예산·결산 절차를 준용한다.
 - ④ 연구소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(법률임)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고 처리하여야 한다.<개정2019. 2. 1>
- 제8조(지원) ① 연구소 평가를 통하여 산학협력단 연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연구소 지원에 대한 대상 및 규모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5 장 평 가

- **제9조(평가)** ① 연구소 평가는 연구소의 통폐합 및 해산이 필요할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 정2018.12.19, 2019, 2, 1>
 - ② 연구소 평가기준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동(융·복합 과제)연구사업, 학술연구 사업, 외부컨설팅사업, 단기교육사업 등 사업수주 실적으로 하고, 연구소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0조(평가결과활용) 연구소 평가결과를 연구소의 통폐합 및 해산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<개정2019. 2. 1>

제 6 장 통폐합 및 해산

- 제11조(통폐합 및 해산) ① 연구소 평가결과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산학협력단장 의 승인을 거쳐 당해 연구소를 통폐합 할 수 있다.<개정2019. 2. 1>
 - ② 연구소의 해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해산할 수 있다.<개정2019. 2. 1>
 - 1.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때
 - 2. 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 - 3. 연구소 평가결과에 따라 해산이 인정될 때
 - ③ 연구소가 자진 해산을 하고자할 시에는 연구소장은 [별첨 2]의 일반연구소 해산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개정2014. 6. 9. 2019. 2. 1>
 - ④ 연구소가 해산되면 연구소의 모든 재산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.<개정2019. 2. 1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내규 시행 전에 설립된 연구소는 이 내규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| 일반연구소 설립신청서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|------|-----|
| 연구소 명칭 | (국문) (영문) | | | | |
| 연구 분야 (사업 분야) | | | | | |
| 기취시 레포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신청인 대표 | 연락처 | | e-n | nail | |
| 공동 신청인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
위와 같이 일반연구소 설립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| 결 | 담당 | 부팀장 | 팀장 | 단장 |
|---|----|-----|----|----|
| | | | | |
| 재 | | | | |

[※] 공동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첨 2]

| 일반연구소 해산신고서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|------|-----|
| 연구소 명칭 | | | | | |
| 연구 분야 (사업 분야) | | | | | |
| 연구소장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연락처 | | e-n | nail | |
| 연구원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| | 학 과 | | 성 | 명 | (인) |

위와 같이 일반연구소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| 결 | 담당 | 부팀장 | 팀장 | 단장 |
|---|----|-----|----|----|
| 재 | | | | |

[※] 연구원이 다수일 경우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